

#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 안내

최근 국제적인 유가의 급등과 에너지의 97%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대책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난방시공업 분야에서 정격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안전관리, 신기술 보급 등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난방시공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및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제50조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난방시공업 기술인력교육을 실시하오니, 접수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이 될 수 있으니, 교육 실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,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1. 교육명: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

3. 교육비 및 기간: 42,000원, 1일(7시간)

## 2. 교육근거

4. 교육일정 및 장소: 추후 개별통보 예정.

###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(교육)

5. 접수기간: 신규등록자수시 접수

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6. 교육 신청 구비서류

- 교육신청서 1부(소정양식) - 해당 자격증 사본 1부

②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## 7. 교육 미이수 시 조치사항

-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됨. 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)

③④생략

###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(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)

## ☞ 접수 및 문의처

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·기간·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.

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2-5

제일빌딩 3층 전국보일러설비협회

TEL : 02. 3401. 1497~8 FAX : 02. 407. 3790

②③④ 생략

※ 각 시·도회 산하 시, 군, 구청에 소재한 협회 지부, 지회에 문의 (자세한 연락처는 협회지 지부지회 주소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
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-80호(2004. 7. 26)



###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, 교육기관(별표12)

구분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기관
시공업의 기술인력	1.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	-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 1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다. -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1종 기술인력으로 신규 등록된 자.	전국보일러설비협회
	2.난방시공업 제2종,제3종기술자과정	-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 2종 또는제 3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다. -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제3종 기술인력으로 신규등록된다.	

※신규 선임 기술인력은 선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.

###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 일정

일시	지역	장소	주소
11/3(목)	부산,경남,울산	부산일보	부산시 동구 수정동1-10 10층
11/10(목)	광주,전남,전북	건축회관	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694-10 5층
11/17(목)	강원도	중소기업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우산동405-29
11/23(수)	대전,충북,충남,천안	대전연정국악원	대전시 중구 문화동 구 시민회관
11/24(목)	대구,경북	대구시민회관	대구시 동구 대구시민회관
11/29(화)	서울,경기,제주	서울자유회관강당	서울 동작 신대방동395 보라매공원내 3층
12/1(목)	부천,인천	인천남동구청 대강당	인천시 남동구 소래길 88(만수동1008)

### 건설산업기본법

- 시행규칙 갱신(2003.11.21)으로 신축건물감리자에게 난방설비 적합여부를 감리자가 난방시공업자에게 가스, 기름, 전기, 연탄, 보일러 설치시 시공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시 신축건물 준공허가 됨.
- 제9조 의거 건물건설업등록여부 3년이 경과할때마다 건설업등록증 갱신신고를 하는데 신고시 반드시 전문교육 필증을 첨부되어야 시공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음
- 제9조에 전문건설등록(1,2,3종) 관계처에 등록하지 않고 시공설치 보일러교체, 부속교체, 서비스, 시공행위규정(동법제96조1항에)의거 업소정지 및 취소
- 무자격,무등록 불법자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(제96조)의거 1년 징역, 1천만원 범칙금 부여